

인천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2가단1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접수 제351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6,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23.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접수 제35101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21년경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37120,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 제1심은 2021. 8. 24.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선행소송 판결금 71,353,500원[= 68,000,000원 + (68,000,000원 × 12% × 150일/365일), 백원 미만 올림]을 변제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335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양승우

